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 북 구
(행정지원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변 호	323
------------	-----

제출년월 : 2024년 8월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국방에 봉사하는 예비군의
처우개선 및 기본적인 권리를 강화하고자,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을 지원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비군의 사기진작과
권리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성북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해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사기 진작에 기여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안 제2조)

- 지원의 대상이 되는 훈련장, 예비군대원, 차량에 대한 정의
다.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안 제3조)

- 예비군대원들의 입소편의를 위하여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1】

- 1) 「예비군법」 제14조의3
- 2)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
- 3)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별첨2】

다.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2024. 7. 11. ~ 2024. 7. 31. (20일간)
- 2)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결과 : 별도 의견없음
- 3) 비용추계 등 자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별첨2】
- 4)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결과
 - 인권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사항 없음
 - 아동영향평가 결과 : 대상아님(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에 관한 조례로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56보병사단 노고산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1】

관 계 법 령

□ 「예비군법」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② 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예비군의 육성·지원)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29.>

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운영 및 유지
2.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3.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4.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5.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양양,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 및 홍보,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예비군 육성·지원사항의 범위)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

■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별표]

예비군 육성·지원사항의 구체적인 범위(제5조 관련)

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운영 및 유지
 - 가. 사무실의 확보 및 운영·유지의 지원
 - 나. 사무실 신·개축 및 보수의 지원
2.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 가. 사무·통신장비 확보 및 운영의 지원
 - 나. 사무실 집기·비품의 지원
 - 다. 상황실 상황판 제작의 지원
3.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 유지의 지원
 - 가. 훈련장 진입로의 부지 확보 및 포장과 안내판 설치의 지원
 - 나. 훈련장 안의 예비군 후생·복지시설 설치의 지원
 - 다. 예비군훈련 보조시설 설치·유지의 지원
4.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의 지원
 - 가.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의 지원
 - 1) 관할구역 안에서 작전 중인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의 지원
 - 2) 차량·선박의 확보와 인원·물자 수송의 지원
 - 3) 지역방위작전용 간이 통신장비 및 시설의 확보 및 운영의 지원
 - 4) 구급약품 확보의 지원
 - 5) 개인 장구류 등 장비·물자 확보 및 유지
 - 나. 전투시설의 지원
 - 1) 진지구축 자재·도구의 확보 및 유지의 지원
 - 2) 무기고·탄약고 및 장비고 등의 창고 설치 및 유지
 - 3) 관측소 및 검문소용 시설 지원
5.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양양, 민·관·군의 유대강화 및 홍보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가. 예비군 후생·복지장구 확보의 지원
 - 나. 작전중인 예비군에 대한 위로·격려
 - 다. 예비군의 지역방위작전 동원의 지원
 - 라. 지역주민 신고체제 확립의 지원
 - 마.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의 지원
 - 바. 예비군의 날 행사 및 예비군관련 지역행사의 지원

【별첨2】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기존 보조금형태로 지원하는 예비군 육성지원금에 증액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인 사업으로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함.

4. 작성자

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장 박정훈